

2007. 3.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○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	2007.2.28	2007.2.28	2007.3.7	2007.3.7	세정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1) 제안이유

- 시세감면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시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감면 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- 각종 관계법령의 제·개정 사항 반영과 불부합 사항을 정비·보완하여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 폐지
-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,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 등 50% 감면(안 제16조 내지 17조)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 감면(안 제29조)
-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 감면(안 제3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각종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각종 국가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준칙안에 따라서 현 조례와 맞지 않게 된 부분을 개정하고 세액감면규정을 추가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으로 7장 33조로 편제되어 있던 현 조례를 7장 38조로 재편하면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
- 안 제7조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별도로 제정·시행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서 지방의료원이 제외되므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
- 안 제19조 제1항의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, 안 제20조의 「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7조 등은 법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세액 감면율은 종전과 다름없는 사항입니다.
-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
- 안 제25조는 현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세액감면대상에 대한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감면세율의 변동도 없는 사항입니다.
- 안 제2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 조례 제23조에 따라 2003년 12월 31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상황이 열악하므로 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29조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, 안 제32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이해되며

-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주차장 관련 세액감면 규정은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농업 기반공사(현 한국농촌공사)의 사업소세 감면규정 폐지는 유사 법인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
- 본 조례의 적용일자가 2007년 1월 1일자이므로 소급입법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,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소급적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전면개정 조례로 제출되었지만 현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데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수용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▶질의 : 조례를 2007. 1. 1부터 소급적용하는 이유와 2009. 12. 31까지 한시적용하는 이유는?

○답변 : 현 조례의 적용기간이 2006. 12. 31까지이므로 2007. 1. 1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이며, 3년에 1번씩 조례를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임

▶질의 : 부속주차장에 대한 감면방안은 없는가?

○답변 : 주차장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고 시에 통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임

#### 5. 심사결과

## 6. 붙 임

가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부. 끝.